

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12. 2.(금) 15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은 공개로 하고, 의견청취는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언급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함

5 의결사항

가.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시정명령에 관한 건 - (2011-68-313~408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상파방송 3사(KBS, MBC, SBS)와 종합유선방송사*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,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으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 3사와 93개 종합유선방송사에게 시정명령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

※ 단, 시정명령(안)은 협의기간(7일간) 중 방송 정상화와 지상파의 간접강제금 집행 면제 합의에 따른 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함

* 총 93개 종합유선방송사의 의견진술은 티브로드, 씨제이헬로비전, 현대HCN 등 3개사가 대표로 진술

- 아울러, '770만 가입자 피해를 끼친 지상파3사와 SO를 강하게 질책하고 서둘러 원상복구할 것을 주문한다. 시청자에게 피해 보상대책과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.' 등 6개 사항을 결의 및 권고하기로 함

※ 수정의결 : 의결주문의 시정명령안에서 '조건부 효력'과 '결의 및 권고사항'을 추가하여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방송법 위반사항

㉠ 한국방송공사·문화방송·에스비에스
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HD방송 중단을 초래함으로써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1호를 위반
- 방송을 중단한 주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송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방송 중단을 초래한 책임이 인정됨
- HD방송을 제외한 SD와 아날로그 지상파가 방송되고 있으나, HD방송 중단으로 전국적으로 약 770만의 시청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, 시청자 이익을 현저한 수준으로 저해

㉡ 티브로드 등 7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

- 재송신 금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HD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1호를 위반
- 지상파 HD방송 중단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등 시청자 보호 노력이 미흡
- 시설 변경허가 및 이용약관 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상파 HD방송을 중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제7호, 제77조제1항 및 동법 제99조제1항제2호를 위반

㉔ 씨제이헬로비전(계열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)

- 위의 티브로드 등 74개 종합유선방송사와 위반사항이 동일

※ 다만, 씨제이헬로비전의 경우 재송신 금지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HD방송 중단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없는 방송 중단으로 보기 어려움

② 시정명령 내용 및 권고사항 내용

< 시정명령 내용 >

▶ (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)

- 법원 판결취지를 존중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HD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(간접강제 유연화 등), 직접수신 방안을 강구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
 - 직접수신 방안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 피해조사 및 복구방안을 포함할 것
- 협상 조기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협상 진행경과를 일일 보고할 것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를 중단할 것

▶ (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)

- 지상파HD방송 송출을 재개할 것(단, CJ헬로비전은 기존가입자)
-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상파HD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
- 협상 조기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협상 진행경과를 일일 보고할 것
-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를 중단할 것

※ 단, 시정명령은 7일간의 협의기간 중 방송 정상화와 지상파의 간접강제금 집행 면제 합의에 따른 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함

< 결의 및 권고사항 >

-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770만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친 지상파 3사와 SO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조속한 방송 정상화를 주문함
- 시청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함
- 수신료 기반의 KBS와 공영방송인 MBC, 민영방송인 SBS의 특성을 고려하여, 지상파 3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개 협상할 것을 요구함
-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를 중단할 것
- 협상 조기타결 방안을 제출할 것
- 협상 진행경과를 일일 보고할 것

⑥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함

6. 폐 회 (19:05)